

# 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06,100,090	15,183,003
일반회계	506,100,090	15,183,00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(채무부담행위: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연도내에 사업을 계약하고 대금은 익년도 이후에 지불)

제 4 조 계속비 이월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 이월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중 예비비는 3,000,000천원으로 하며, 재해, 재난 예비비는 1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5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- (2) 재무활동 경비(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, 국도비반환금, 과오납금)
- (3) 공공요금 및 제세, 배상금
- (4) 당직수당(일·숙직비)
- (5) 재해대책 및 복구비